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자재 수급불안 등 대응을 위한 공사계약 관련 업무처리지침 안내

---

1.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818('21.6.3.)호 및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376('21.6.8.)호의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원자재 수급불안 및 가격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안내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전파드리니, 해당 내용이 소속·산하기관,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및 회원사를 통해 공공공사 발주기관에 안내되어 지침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하도급공사의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설계변경 및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민간공사 중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기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준도급계약서 제22조제1항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 해당 내용이 기초자치단체(시·군·구) 건축관련 인·허가 부서 및 회원사 등을 통해 민간공사 발주기관에 안내되어 자재가격 상승 등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조정이 적극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민간공사를 포함한 모든 건설공사의 계약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은 해당 규정의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법무부장관, 통일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세청장, 여성가족부장관, 관세청장, 해양수산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산림청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상청장, 방위사업청장, 조달청장, 새만금개발청장, 통계청장, 문화재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질병관리청장, 특허청장,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강원도지사, 대전광역시장, 충청북도지사, 울산광역시장, 충청남도지사, 경기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도로공사사장,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국공항공사 사장,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

공업사무관

이광우

건설산업과장

전결 2022. 3. 28.

우정훈

협조자

시행 건설산업과-2490

(2022. 3. 28.)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산업과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4585

팩스번호 044-201-5547

/ [yucamir@molit.go.kr](mailto:yucamir@molit.go.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